#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윤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220

발의연월일: 2021. 5. 20.

발 의 자:김윤덕 • 윤재갑 • 천준호

이동주・안호영・이용빈

신영대 · 강훈식 · 김홍걸

박상혁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재건축 사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 되, 투기과열지구 또는 「주택법」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 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 지등소유자는 1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다주택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도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1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예측하지 못한 사정에 의해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발생.

이에,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다주택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 물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 뢰를 보호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다주택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(안 법률 제1 49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).

법률 제 호

##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49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중 "경우에는"을 "경우 또는 제48조제2항제7호나목1)의 개정규정시행 후 「주택법」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되기 전에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안 법률 제14943호 도시 및 주거환 법률 제14943호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(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 제3조(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 급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① 급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①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② 제48조제2항제7호나목1)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「주택 법」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외의 투기과열지 구에서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 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 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 ----- 경우 또 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 는 제48조제2항제7호나목1)의 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인과 양 개정규정 시행 후 「주택법」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.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에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-----